

2016. 5. 16. 10:00

**제24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임동화 · 나상권

201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속예술단체 전수관(연습장)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 우리 군 인구가 20만을 돌파('16.2.22)함에 따라 21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달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미래전략사업을 중점 추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관 폐교부지인 舊대평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 하빈들소리 보존회 등 민속예술단체의 전수관(연습장)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 현재,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로 인한 방문객 및 직원들의 차량 증가로 군청사 주차장이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군청사 주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 군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함.

○ 화원읍청사 주차장 확장

- 화원읍청사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마비정 벽화마을 주변 경관림 조성

- 달성군의 주요 관광지인 마비정 벽화마을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림으로 조성,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제공과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및 부지 교환

- 우리 군 관내로 경찰특공대를 이전·유치하고, 우리 군에서 이전부지 조성 후 경찰청 소유의 (구)화원면허시험장 부지와 교환, 부지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

- 비슬산 휴양림 입구에 당초 연수원을 건립키로 계획 하였으나, 연수원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만 숙박이 가능하여 관광 인프라 확대 구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준공 후 운영 및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유스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함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숙박 및 일반인의 개별 숙박도 일부 가능하여 청소년 여가 선용 및 일반 관광객의 체류형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관광 명소화 사업에 기여

○ 다사 테니스장 조성

- 다사 매곡테니스장에 다사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현 테니스장을 대체할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함.

○ 군민체육관 증·개축 사업

-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 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체육관 활용면적(고정무대, 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주변부지(수도용지, 국·공유지)를 추가 확보하여 건축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함.

○ 마비정 벽화마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 전망대 및 쉼터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전망대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민속예술단체 전수관(연습장)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217-3 등 5필지
 - 관련지번 : 217-3, 303-6, 304-1, 304-2, 304-5
- 기 간 : 2016. 3. ~ 2018. 12.
- 면 적 : 대지 7,885㎡, 건물 659.3㎡
- 규 모
 - 민속예술단체 전수관 : 130㎡
 - 생활문화공간 조성 : 529.3㎡

(주민자율공간, 주민공동체 공간, 다목적홀, 공용시설, 기타 북 카페, 문화 카페, 공동체 부엌 등)
- 매입예산가격 : 2,269백만원(토지 : 2,115, 건물 : 154)

○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03 등 16필지
 - 관련지번 : 1303, 1304, 1305-3, 1305-4, 1307, 1308, 1308-3, 1309, 1425-3
1425-20, 1425-21, 2394-22, 산29-3, 산29-10, 산34, 산50
- 기 간 : 2016. 6. ~ 2017. 6.
- 사업량 : 9,067㎡

■ 주차장 : 7,414㎡

- CCTV관제센터 관련 주차장 : 1,682㎡(60면)
- 군청사 주차장 : 5,732㎡(200면)

■ 주민쉼터 : 1,653㎡

-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

- 사업비 : 6,533백만원(토지매입비 : 5,826, 공사비 : 685, 용역비 : 22)

○ 화원읍청사 주차장 확장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45-2 등 4필지
 - 관련지번 : 445-2, 446-2, 447-1, 448-2
- 기 간 : 2016. 6. ~ 2017. 6.
- 사업량 : 1,629㎡(60면)
- 사업비 : 9,652백만원(토지매입비 : 9,416, 공사비 : 226, 용역비 : 10)

○ 마비정 벽화마을 주변 경관림 조성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314번지
- 면 적 : 6,833㎡ (지목 : 임야)
- 매입가액 : 600백만원

○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및 부지 교환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 124-1번지 일원
- 면 적 : 95,783㎡(형질변경 35,720㎡)
- 사업비 : 120억원(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 교환부지 현황(달성군↔대구지방경찰청)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지역·지구	비 고
(구)화원면허 시 험 장	화원읍 성산리 412-1	21,835㎡ (6,606 평)	생산녹지, 광로3류, 완충녹지 저촉	경찰청 소유
이전 대상지 (화원, 옥포)	화원읍 설화리 839, 옥포면 기세리 산31-1 일원	95,783㎡ (28,974평)	개발제한, 자연녹지	군 매입 및 부 지 조 성

○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

구 분	현 행	변 경(안)	비 고
용 도	연수원	유스호스텔	
위 치	유가 용리 31-2외 1필지	유가 용리 31-2외 3필지	2필지 증가
부지면적	5,949㎡	6,766㎡	817㎡ 증가 (인근부지 추가매입)
연 면 적	4,950㎡	6,150㎡	1,200㎡ 증가 (객실, 전기·기계실 등)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지하2층/지상3층	지하2층 증가 (전기·기계실·물탱크실)
객 실 수	66실(260인)	80실(300인)	14실(40인) 증가
사 업 비	156억원	197억원	41억원 증가 (공사33.4, 감리4.1, 기타3.5)
기 간	2015. 8 ~ 2017.12.	2015. 8 ~ 2017.10.	

○ 다사 테니스장 조성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매곡리 840번지 등 4필지
 - 관련지번 : 840, 841, 842, 843
- 면 적 : 3,796㎡
- 내 용 : 테니스장 3면(1면당 18m×40m), 화장실, 주차장, 부대
편의시설 등
- 기 간 : 2016. 5 ~ 2017. 6
- 사업비 : 1,900백만원 (토지매입비 : 1,200, 공사비 : 700)

※ 기존 다사(매곡)테니스장 현황

- 위 치 : 다사읍 매곡리 919-1번지 일원

- 면 적 : 3,418㎡(클레이코트 5면, 관리동 등)
- 조성일자 : 2003. 1.
- 이용현황 : 등록 단체 10개 클럽(회원수 267명)

○ 군민체육관 증·개축 사업

- 체육관 부지주변 추가확보

■ 매입대상토지

지 번	지 목	소유자	편입면적(㎡)	비 고
성하리 228-36	수도용지	대구광역시	233	
성하리 252-10	수도용지	대구광역시	178	
계(2필지)			411	

■ 취득시기 : 2016. 3. ~ 2016. 6.

■ 부지매입비 : 124백만원

※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토지

지 번	지 목	소유자	지적(㎡)	편입면적(㎡)	비 고
250-2	도	국(건설부)	20	8	
250-3	도	대구광역시	53	44	
716-1	도	국(건설부)	75	8	
716-32	도	국(건설부)	1,954	401	
252-8	도	대구광역시	76	76	
251-2	도	대구광역시	10	10	
400-3	도	국(건설부)	238	81	
계(7필지)			2,426	628	

- 건축규모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보 계획

- (건축규모) 당초 지하2층/지상2층 → 변경 지하2층/지상3층
- (부지면적) 당초 10,439㎡ → 변경 11,478㎡(증 1,039㎡)
- (건축연면적) 당초 4,875㎡ → 변경 5,937.26㎡(증 1,062㎡)
- 사업비 변경 : 당초 11,000백만원 → 변경 19,300백만원(증8,300백만원)

※ 총사업비(추정)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13.7 기준)	변경('16년 현재)	비 고
건축비(공사비)	9,994,390	18,096,768	증)81억원
설계비	560,887	560,887	
감리비	311,326	311,326	
부대시설비	24,986	24,986	
기타비용	108,411	306,033	수도용지 보상비 포함
계	11,000,000	19,300,000	증)83억원

○ 마비정 벽화마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417번지
- 기 간 : 2016. 1. ~ 2016. 12.
- 면 적 : 1,646㎡
- 사업비 : 400백만원(토지매입 : 200, 공사비 : 200)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붙 임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1부. 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4(6)	3,144.5	928,172	18(96)	141,488.42	50,502,687	22(102)	144,632.92	51,430,859
	1.매입	토지	1(6)	2,304	743,813	8(96)	127,100	11,034,783	9(102)	129,404	11,778,596
		건물	3	840.5	184,359	8	2,301.16	479,904	11	3,141.66	664,263
	2.교환										
	3.기타	토지									
		건물				2	12,087.26	38,988,000	2	12,087.26	38,988,000
처 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28-1	1,038	1,038	283,685,400	2016년	군청사 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봉동길 10	문영달	2015.12. 의회 의결
2	장	대	논공읍	금포리	1328-2	553	553	263,338,600					
3	전	대	논공읍	금포리	1328-3	42	42	17,131,800					
4	전	전	논공읍	금포리	1326-2	165	165	43,725,000					
5	구	전	논공읍	금포리	1326-3	177	177	46,905,000 (인근토지 공시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20, 108동 1507호 (상인동, 보성은하아파트)	문정훈 (문영달 의 자)	"
6	전	전	논공읍	금포리	1326-4	329	329	89,027,4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봉동길 10	문영달	"
7 (건물)	대전	장	논공읍	금포리	1328-1 1326-2	561	561	100,620,000					
8 (건물)	장	대	논공읍	금포리	1328-2	195	195	53,235,000					
9 (건물)	장	대	논공읍	금포리	1328-2	84.5	84.5	30,504,500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학	학	하빈면	대평리	217-3	6,175	6,175	956,507,000	2016년	민속예 술단체 전수관 및 생활문 화공간 조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대구 광역시교 육감	
2	답	학	하빈면	대평리	303-6	40	40	1,928,000					
3	답	학	하빈면	대평리	304-1	547	547	29,264,500					
4	답	학	하빈면	대평리	304-2	1,072	1,072	57,352,000					
5	답	학	하빈면	대평리	304-5	51	51	2,315,400					
6 (건물)	학	학	하빈면	대평리	217-3	659.3	659.3	182,606,600 (시가표준액)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7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5-3	1,228	1,228	519,566,800	2016년	군청사 주차장 및 주민센터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16길 30-9	(주)부성리 사이클링	
8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5-4	360	360	152,316,000					
9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	1,570	1,240	524,644,000					
10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3	1,007	1,007	448,517,800					
11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0	224	224	99,769,600					
12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1	20	20	8,908,000					
13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3	411	411	172,209,000					
14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10	20	20	8,380,000					
15	전	대	논공읍	금포리	1303	780	780	226,200,000			"	김숙화	
16	대	대	논공읍	금포리	1304	873	873	365,787,000					
17	전	장	논공읍	금포리	1308	437	437	175,499,200					
18	장	장	논공읍	금포리	1308-3	1,189	1,189	498,191,000					
19	임	장	논공읍	금포리	산34	444	444	186,036,000			"	김기영 외2	
20	전	장	논공읍	금포리	1309	571	571	143,035,500					
21	구	잡	논공읍	금포리	산50	229	229	95,951,000					
22	도	잡	논공읍	금포리	2394-22	34	34	14,246,0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					주 소	성 명	
23 (건물)	대	대	논공읍	금포리	1304	173.78	173.78	3,103,000 (시가표준액)	2016년	군청사 주차장 및 주민센터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16길 30-9	김숙화	
24 (건물)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5-3 1305-4	247	247	35,369,000 (시가표준액)			"	(주)부성리 사이클링	
25 (건물)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	247.5	247.5	17,287,000 (시가표준액)			"	"	
26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6-2	388	388	856,704,000	2016년	화원읍 청사 주차장 조성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내동길 12	박동영 외5인	
27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5-2	402	402	887,616,000			"	"	
28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7-1	457	457	1,009,056,000			"	박동영 외6인	
29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8-2	382	382	923,294,000			"	"	
30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445-2 446-2 447-1 448-2	436.68	436.68	106,113,240 (시가표준액)			"	박동영	
31	임	임	화원읍	본리리	1314	6,883	6,883	60,845,720	2016년	마비정 벽화마을 경관립 조성	대구 달성군 구지면 수리리 615-1	오현수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					주 소	성 명	
32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0-1	4,364	4,220	5,570,4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대구 달서구 진천동 798	배경수외 5인	
33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0-5	1,785	887	1,215,190			경북 경산시 중산동 35-3 신성아파트 109동 1801호	신노옥	
34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1-1	8,628	8,628	11,734,080			대구 수성구 교학로 111, 102동 102호(만촌동, 산장맨션)	임천구 외 35명	
35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1-2	496	496	699,36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39	배도호	
36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1-3	793	793	1,118,130			대구 수성구 청수로 257, 1302동 1001호(황금동, 캐슬골드파크)	김성윤	
37	임	임	옥포면	기세리	산32	793	793	1,118,130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220	김경일	
38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1	529	529	41,209,100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220	김경일	
39	구	구	옥포면	기세리	1-2	254	60	4,674,000				한국농어 촌공사	
40	답	답	옥포면	기세리	2-1	1,183	1,183	92,155,700			대구 달서구 월배로38길 6-10(상인동)	최일중	
41	전	전	옥포면	기세리	3	1,831	1,831	126,339,000			대구 달서구 상인동 171-1 상인대성스카이렉스 102동 1405호	신월년	
42	전	전	옥포면	기세리	4-1	1,402	1,402	132,208,60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633	김승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					주 소	성 명	
43	구	구	옥포면	기세리	4-2	116	116	10,938,8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한국농어 촌공사	
44	전	전	옥포면	기세리	5	1,302	1,302	89,838,000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87	전두만	
45	전	전	옥포면	기세리	6	608	608	41,952,000			대구 동구 신천동 919-5	장효준	
46	전	전	옥포면	기세리	7	1,220	1,220	84,180,000			대구 달서구 용산서로 9, 102동 1303호(용산동, 용산2차태왕타운)	서미자	
47	전	전	옥포면	기세리	8	889	889	61,341,000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17, 106동 2405호	배기호	
48	전	전	옥포면	기세리	9-1	569	569	69,190,40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655	임오권	
49	구	구	옥포면	기세리	9-2	572	572	69,555,200				한국농어 촌공사	
50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1-1	506	506	61,529,600			대구 북구 영송로 85, 202동 802호(태전동, 한신중앙아파트)	김대식	
51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2	565	539	37,191,000			대구 동구 신천동 919-5	장효준	
52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3	1,177	1,152	74,188,800			대구 동구 신천동 119-5	장효준	
53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4	621	621	39,992,400			대구 달서구 장기동 809 영남네오빌파크 102-503	박주영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					주 소	성 명	
54	전	전	옥포면	기세리	15	377	377	24,278,8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부산 사하구 다대1동 382-3 자유아파트 109동 902호	주상호 외 1명	
55	도	도	옥포면	기세리	991	926	130	8,372,000				건설부	
56	도	도	옥포면	기세리	992	2,317	61	3,928,400				건설부	
57	구	구	옥포면	기세리	993-5	7,332	7	450,800				농림축산 식품부	
5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	3,471	3,471	17,702,1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0 가든하이츠 105동 103호	조성재	
59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6	43,636	21,104	31,022,880			대구 서구 비산동 44-16	이종명 외 5명	
60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9	298	298	569,180			대구 달성군 화원면 설화동 739	배도호	
61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0	1,289	1,289	2,461,990			대구 수성구 청수로 257, 1302동 1001호(황금동, 캐슬골드파크)	김성윤	
62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2	893	666	1,025,640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38, 103동 1704호(대실역청아람1단지)	장명지	
63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4	99	66	101,640			대구 달성군 화원면 설화동 919	김병호 외 3명	
64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3	6,347	6,347	51,410,700			대구 중구 삼덕동 3가 113-4	박종기 외 4명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65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4	2,380	2,380	10,115,0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대구 달서구 월성동 364 월성보성타운 106-605	이범석	
66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1	8,132	8,132	12,198,000			대구 달서구 송현동 125-1	조정숙	
67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2	5,355	5,355	8,086,050			대구 남구 대명동 3018-1	김종국	
68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3	397	397	611,380			대구 동구 신암동 1028	현봉한	
69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4	793	793	1,237,080			대구 서구 내당동 1098	표용진	
70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6	595	595	3,159,450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병포리 13	임용득	
71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7	1,983	1,983	3,093,48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4-16	김석수	
72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1	1,686	1,686	8,868,360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0 가든하이츠 105동 103호	조성제	
73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2	1,983	1,983	16,538,22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40	드로아교회 (양천석)	
74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3	298	298	2,485,320			대구 북구 태전동 300?	김석수	
75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38-2	593	593	242,003,300			대구 달서구 송현동 125-1	조정숙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					주 소	성 명	
76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8-4	161	161	22,926,40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38-2	조정숙	
77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9	1,655	1,655	164,010,5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38-2	조정숙	
78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	329	329	106,859,2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40	드로아교회 (양천석)	
79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1	255	255	19,915,5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 36, 106동 510호(창신맨션)	양천석	
80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2	836	836	31,768,0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 36, 106동 510호(창신맨션)	양천석	
81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3	476	476	37,175,6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887	곽종국	
82	구	구	회원읍	설화리	840-4	165	150	11,715,000				한국농어 촌공사	
83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5	922	922	59,008,0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 36, 106동 510호(창신맨션)	양천석	
84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6	96	96	21,955,2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 2346	한수화	
85	주차장	주차장	회원읍	설화리	840-8	240	240	70,152,00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40	드로아교회 (양천석)	
86	구	구	회원읍	설화리	841-1	141	140	10,934,000				한국농어 촌공사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7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2	1,091	1,091	8,498,890	2016년	경찰 특공대 이전	대구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4-16	김석수	
88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3	774	774	6,029,460			대구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4-16	김석수	
89	임	임	회원읍	설화리	844	760	760	5,449,200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병포리 13	임용득	
90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7	557	557	43,501,700				재무부	
91	답	답	회원읍	설화리	841-2	32	31	2,421,100				국토교통 부	
92	도	도	회원읍	설화리	841-3	149	8	624,800				국토교통 부	
93	도	도	회원읍	설화리	841-4	4	1	78,100				건설교통 부	
94	구	구	회원읍	설화리	1129-3	3,790	374	29,209,400				농림축산 식품부	
95 (건물)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38-2	254.8	254.8	100,713,680 (시가표준액)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38-2	조정숙	
96 (건물)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	226.7	226.7	30,754,810 (시가표준액)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40	드로아교회 (양천석)	
97 (건물)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6	55.4	55.4	3,956,400 (시가표준액)			대구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838-2	조정숙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98 (건물)	잡	잡	유가면	용리	31-2	5,860	6,150	19,688,000,000 (사업비)	2017년	유스 호스텔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잡	잡	유가면	용리	31-3	89							
	임	임	유가면	용리	산2-23	48							
	임	임	유가면	용리	산2-34	769							
99	전	전	다사읍	매곡리	840	1,865	873	76,824,000	2016년	다사 테니스장 조성	대구 서구 달서로16길 16-15, 7동 101호	신동월외 1명	
100	답	답	다사읍	매곡리	841	966	966	79,888,200			"	신동월	
101	답	답	다사읍	매곡리	842	1,031	1,031	72,582,4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88-6 범어청구하이츠 105동1601호	김중욱	
102	답	답	다사읍	매곡리	843	926	926	76,580,200			"	김중욱	
103	수	체	현풍면	성하리	228-36	233	233	62,537,200	2016년 ~2017년	군민 체육관 증·개축	대구 중구 공평로 33	대구시	
104	수	체	현풍면	성하리	252-10	178	178	47,775,2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					주 소	성 명		
105 (건물)	체	체	현풍면	성하리	235-4	10,439	5,937.26	19,300,000,000 (사업비)	2016년 ~2017년	군민 체육관 증·개축	논공읍 금포리 33		달성군	
	수	체	현풍면	성하리	228-36	233					대구 중구 공평로 33	대구시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0-4	8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0-10	178								
	수	체	현풍면	성하리	716-33	8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2-8	76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1-2	10					건설부	국		
	도	체	현풍면	성하리	250-5	44								
	도	체	현풍면	성하리	716-34	350								
	도	체	현풍면	성하리	716-35	51								
	도	체	현풍면	성하리	400-3	81								
106	전	전	화원읍	본리리	1417	1,646	1,646	34,566,000	2016년	마비정 벽화마을 쉼터 조성	대구 서구 내당동 463-8 광장타운 202동 1203호		백태임	

위 치 도

【민속예술단체 전수관(연습장)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217-3 등 5필지



현 장 사 진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217-3 등 5필지



위 치 도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03 등 16필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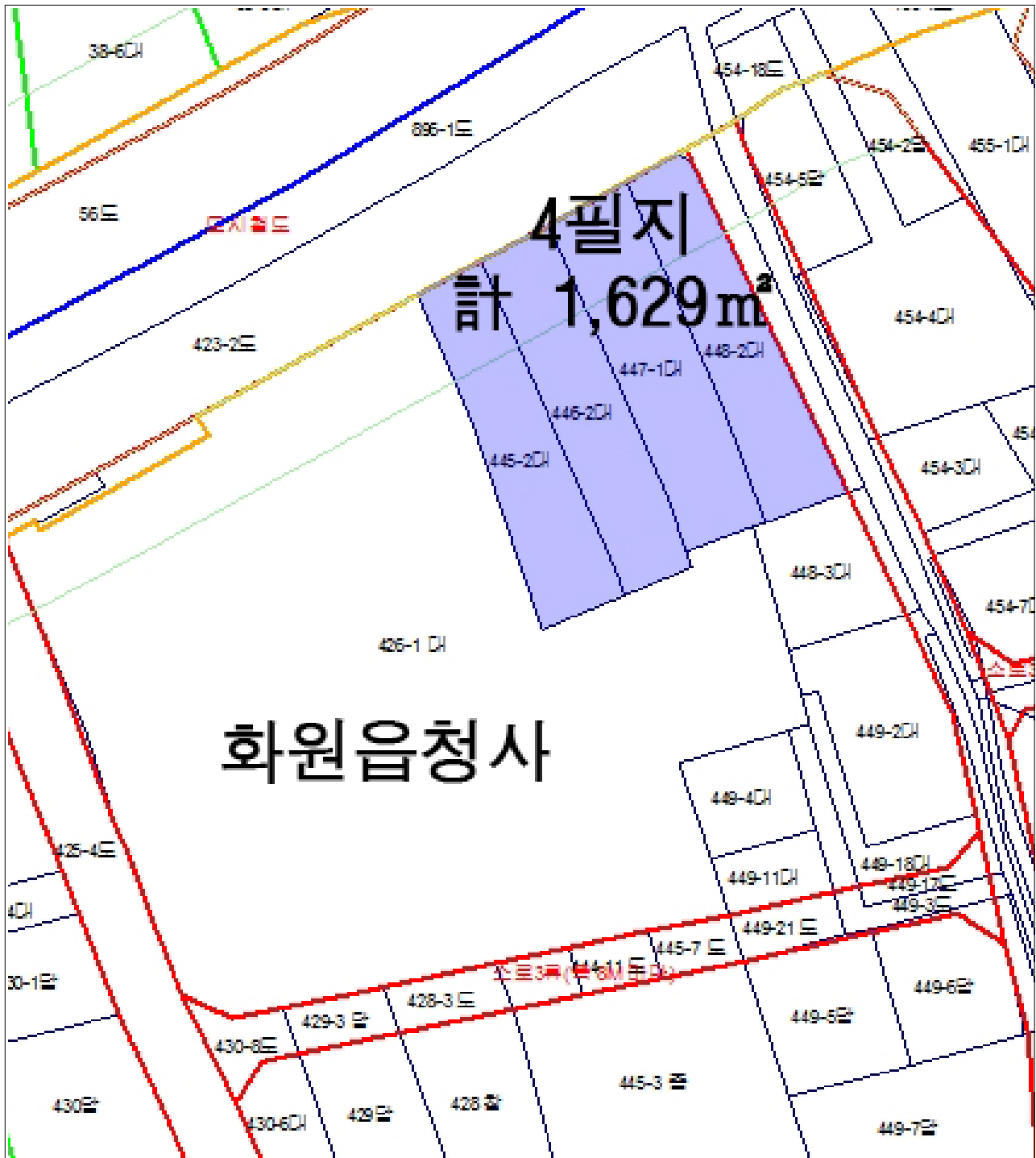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03 등 16필지



위 치 도

【화원읍청사 주차장 확장】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45-2 등 4필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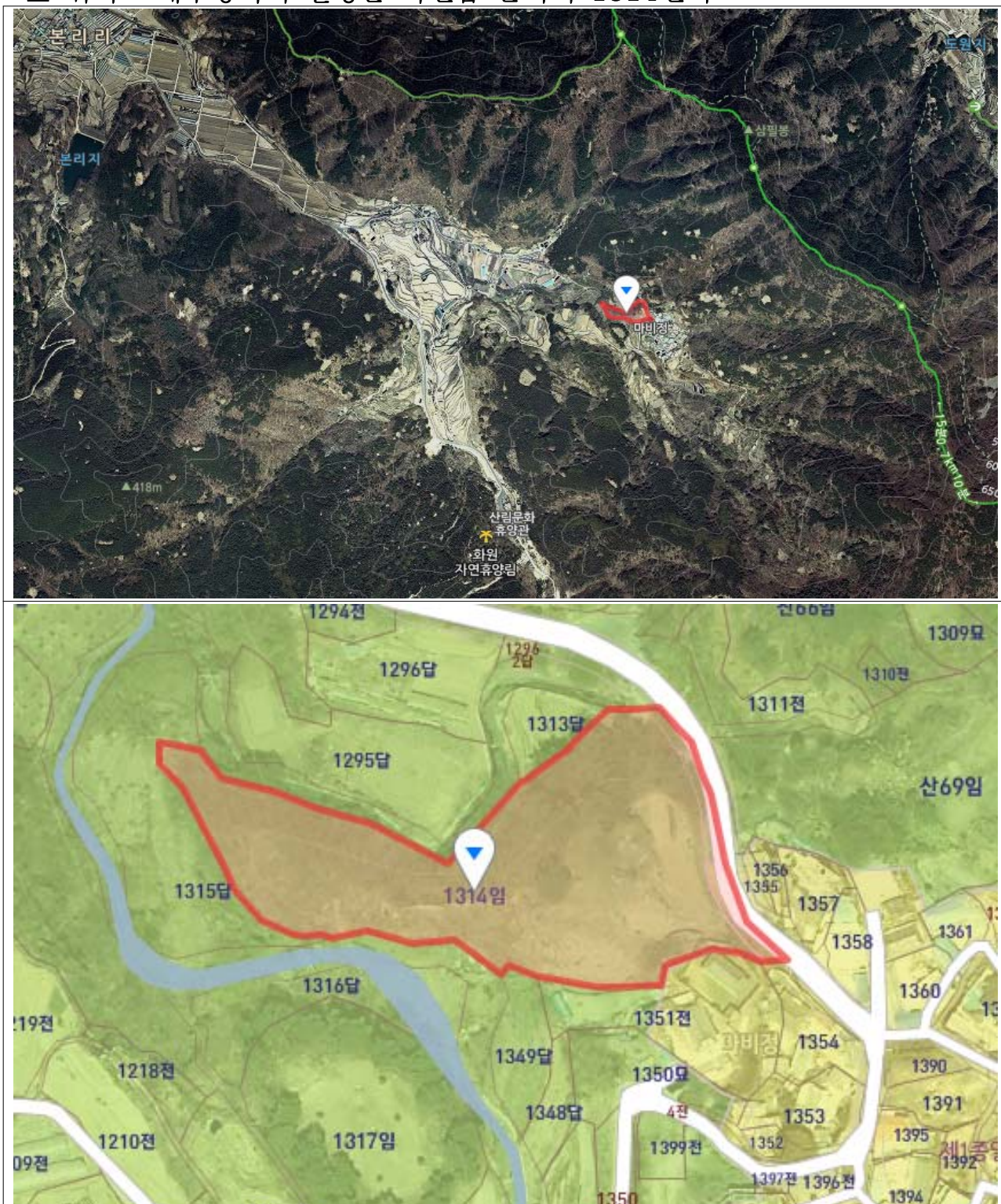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45-2 등 4필지



위 치 도

【마비정 벽화마을 주변 경관림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314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314번지



위 치 도

【대구경찰특공대 이전 및 부지 교환】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24-1번지 일원



현 장 사 진(조감도)



현 장 사 진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

□ 위치 : 달성군 유가면 용리 31-2번지 등 4필지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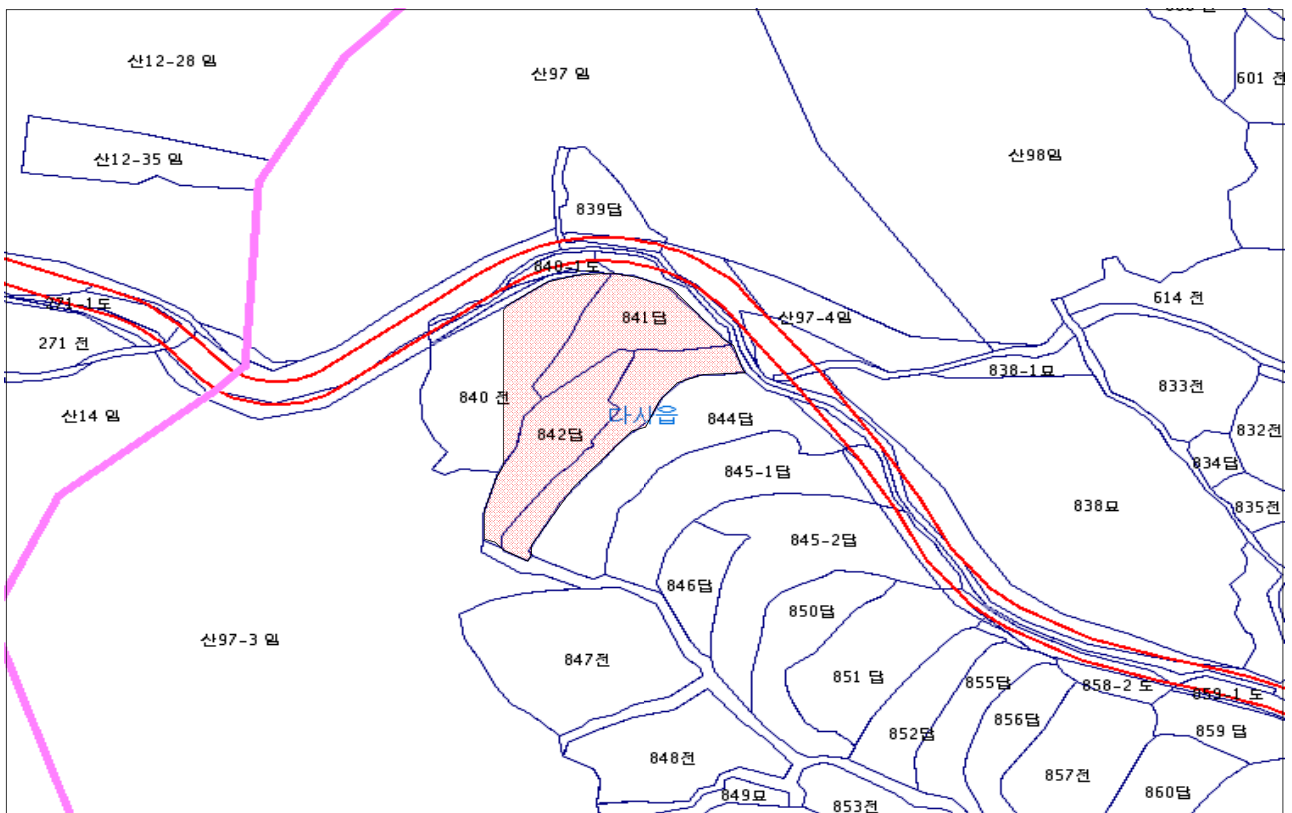
□ 위치 : 달성군 유가면 용리 31-2번지 등 4필지



위 치 도

【다사 테니스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매곡리 840번지 등 4필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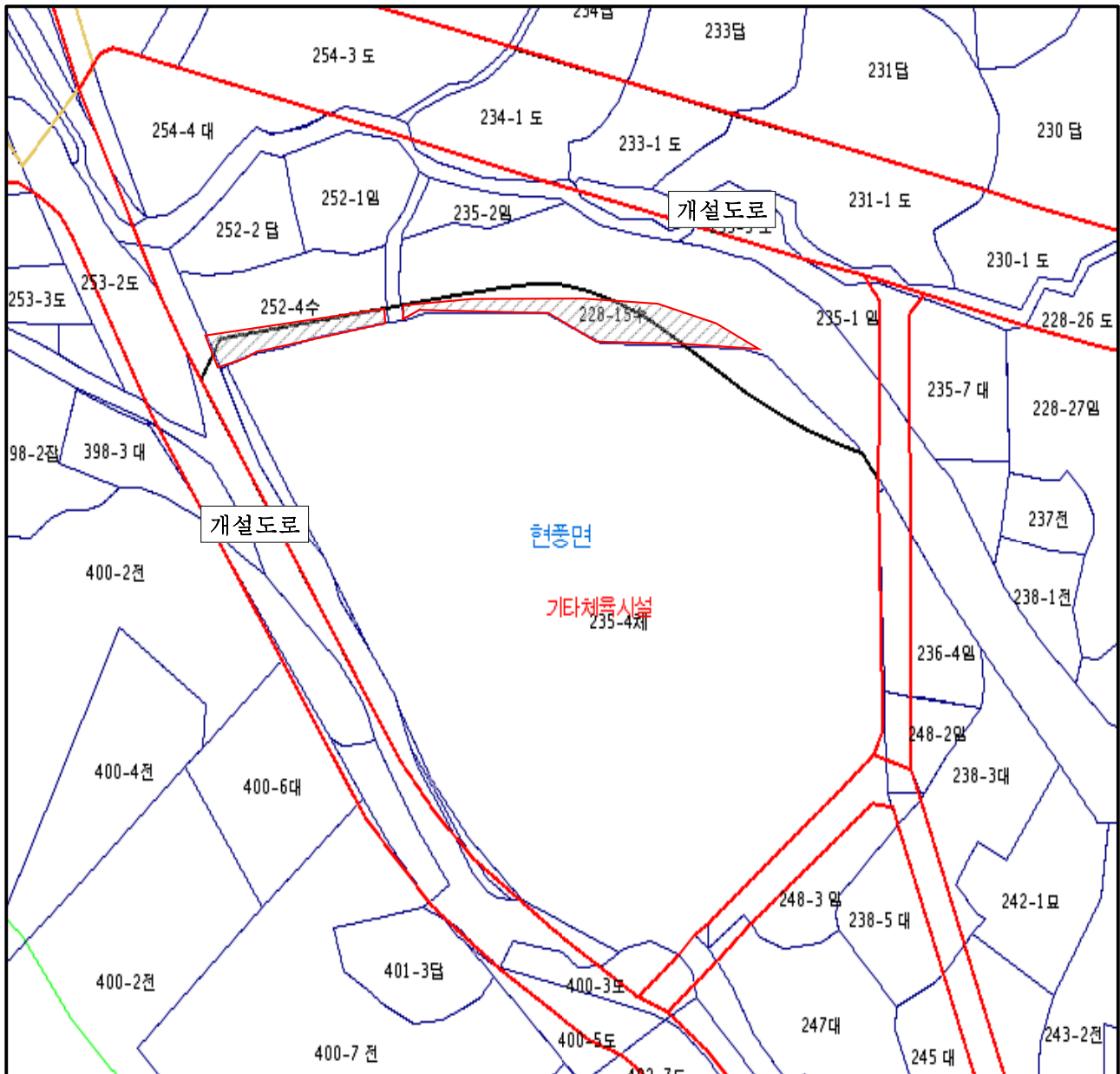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매곡리 840번지 등 4필지



위 치 도

【군민체육관 증·개축 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하리 228-36번지 일원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하리 228-36번지 일원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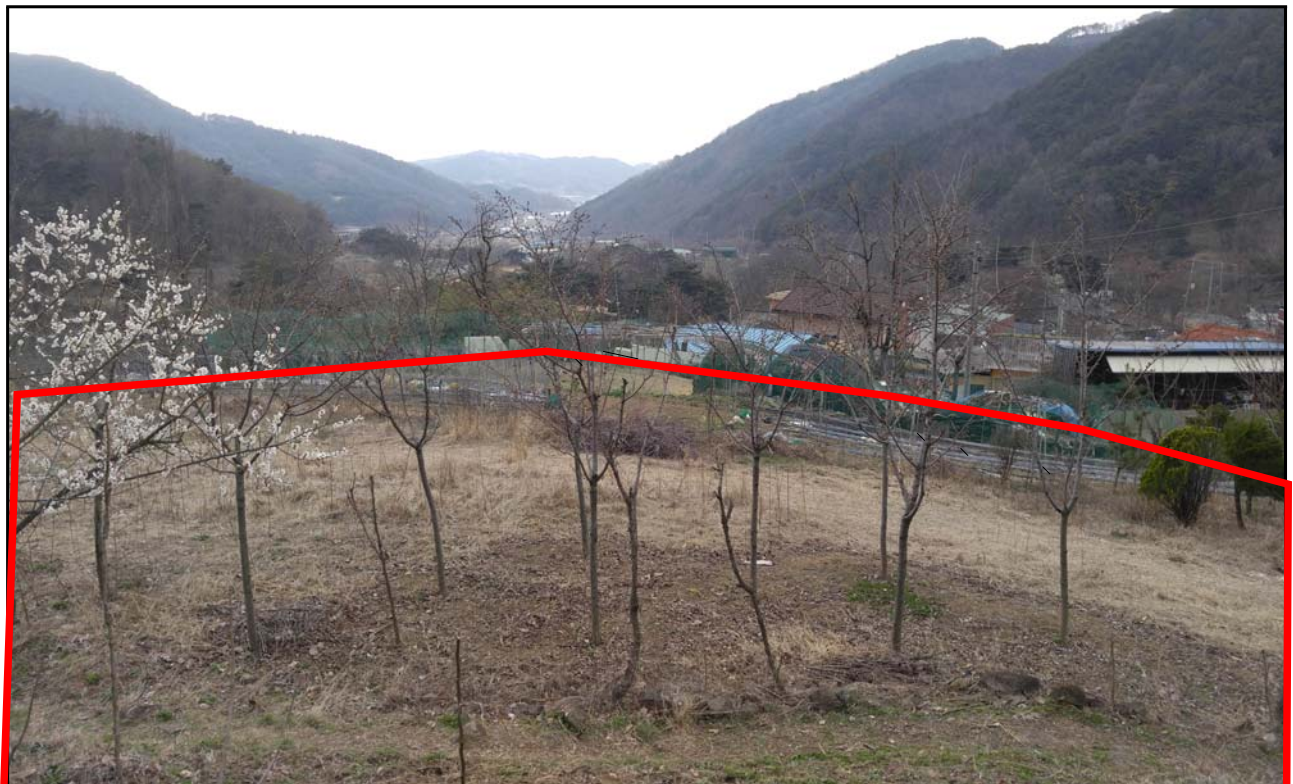
【마비정 벽화마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252-10번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417번지



현 장 사 진



II. 검토의견

201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속예술단체 전수관(연습장)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교육청 소관(구 대평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민속예술단체의 전수관과 생활문화 공간조성으로 활용코자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사업입니다.

폐교부지의 활용방안과 민속예술단체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군청사의 남편으로

인접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군청사 주차장과 CCTV관제센터 주차장, 그리고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청사 주차공간 (260면 정도)확보와 향후 행정수요 발생시 다목적 미래전략 부지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화원읍청사 주차장 확장사업은 당면한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공용건축물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화원읍 청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매수시기로 사료됨.

○마비정 벽화마을 주변 경관림 조성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마비정 벽화마을에 개발 제한 구역 임야를 매입하여 경관림을 조성하면 입지여건으로 볼 때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마비정 벽화마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대상지역은 본리리 마을 뒷쪽 산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제한 지역내 전으로 조망권이 좋은 곳에 입지해 있으며 500여평의 부지위에 쉼터와 전망대를 설치하면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대구경찰특공대이전 및 부지교환

대구경찰특공대를 관내로 유치하고 이전대상 부지를 매입·조성하여 경찰청소유의 구 화원면허시험장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부지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됨.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

비슬산 휴양림입구에 당초 『연수원 건립』을 변경하여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 관광인프라 확대 취지를 살리고 시설규모도 확대하여 청소년 여가선용 및 일반 관광객의 체류형 숙박 시설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사 테니스장 조성

기존의 매곡 테니스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테니스장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추가적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시설보다 규모면에서 확대하여 많은 이용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군민체육관 증·개축 사업

증·개축을 통해 군민체육관 활용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토지 매입과 국공유지 무상귀속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건축규모도 지상 3층으로 1층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필요공간의 확보와 공사비 증가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됨.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1. 제 안 자 : 달성군수****2. 제안이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각종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지역현안사업의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635,500	540,000	95,500
일반회계	계	620,000	524,500	95,500
	일반회계	620,000	524,500	95,500
특별회계	계	15,500	15,500	0
	의료급여기금	491	441	5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7,500	7,400	100
	기반시설	111	111	0
	치수사업	7,157	7,307	△150
	농공지구관리	241	241	0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35,500	540,000	95,500	17.69
일 반 회 계		620,000	524,500	95,500	18.21
	지방세수입	113,998	114,338	△340	△0.30
	세외수입	27,360	26,155	1,205	4.60
	경상적세외수입	19,486	18,998	488	2.57
	임시적세외수입	7,874	7,157	717	10.01
	지방교부세	110,700	103,000	7,700	7.48
	조정교부금등	36,600	20,250	16,350	80.74
	보 조 금	176,220	177,215	△995	△0.56
	국고보조금등	116,427	117,823	△1,396	△1.18
	시·도비보조금등	59,793	59,392	401	0.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122	83,542	71,580	85.68
특 별 회 계		15,500	15,500	0	0.00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35,500	540,000	95,500	17.69
일 반 회 계		620,000	524,500	95,500	18.21
	일반공공행정	50,386	31,245	19,141	61.26
	공공질서및안전	7,123	7,805	△682	△8.74
	교육	7,632	6,975	657	9.42
	문화및관광	53,504	34,139	19,365	56.72
	환경보호	12,146	11,410	736	6.45
	사회복지	159,115	157,345	1,770	1.12
	보건	11,972	10,185	1,787	17.55
	농림해양수산	42,233	39,310	2,923	7.44
	산업·중소기업	2,354	2,303	51	2.23
	수송및교통	118,138	90,094	28,044	31.13
	국토및지역개발	64,038	59,118	4,920	8.32
	예비비	18,048	7,816	10,232	130.93
	기타	73,311	66,755	6,556	9.82
특 별 회 계		15,500	15,500	0	0.00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35,500	540,000	95,500	17.69
일 반 회 계		620,000	524,500	95,500	18.21
	인건비	59,936	59,909	27	0.04
	물건비	32,466	31,362	1,104	3.52
	경상이전	227,178	223,035	4,143	1.86
	자본지출	274,560	201,184	73,376	36.47
	시설비및부대비	248,136	179,242	68,894	38.44
	민간자본이전	17,373	14,732	2,641	17.9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46	1,996	250	12.5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18	836	282	33.74
	자산취득비	5,687	4,378	1,309	29.90
	융자및출자	10	10	0	0.00
	내부거래	1,200	1,175	25	2.17
	예비비및기타	24,650	7,825	16,825	215.00
	예비비	18,048	7,815	10,233	130.93
	반환금기타	6,602	10	6,592	66832.07
특 별 회 계		15,500	15,500	0	0.00

5. 주요 내용

□ 예산규모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00억원 보다
955억원(중 17.69%)이 증가된 6,355억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45억원 보다 955억원이 증액된
6,2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비슬산과 화원유원지 전기차 운행으로 6억6천3백만원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2억7천 3백만원 등 사용료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보훈회관 건립기금 집행잔액 3억7천8백만원 등 ,
총 12억 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7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조정교부금의 경우는
일반조정교부금 149억 7천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163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보조금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13억 9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총 95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주요 투자사업(자체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액
기획감사실	구(舊) 대평초등학교 부지매입	0	2,300,000	2,300,000
기획감사실	마을 거리 전시관	0	15,000	15,000
회계과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0	5,962,175	5,962,175
회계과	화원읍청사 주차장 확장	0	9,450,372	9,450,372
회계과	현풍면청사 주차장 확장	0	50,000	50,000
회계과	현풍면청사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비	0	500,000	500,000
주민지원과	보훈회관 시설 유지보수비	5,000	24,000	19,000
주민지원과	충혼당 건립 공사 (실시설계, 시설비)	135,551	218,416	82,865
주민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휴게실 건립	0	100,000	100,000
사회복지과	장애인근로작업장 수전설비공사	0	120,000	120,000
사회복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50,000	22,000	△28,000
농업정책과	국도 개방형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설치	180,000	200,000	20,000
농업정책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 보수	0	20,000	20,000
환경과	먹는물 공동시설 급수시설 설치	30,000	0	△30,000
환경과	천연미네랄수 개발	30,000	0	△30,000
건설과	화원설화1리(제일정밀앞)도시계획도로 개설	248,200	748,200	500,000
건설과	화원설화1리(8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1,050,000	250,000
건설과	화원천내2리(농협주유소옆)도시계획도로 개설	900,000	950,000	50,000
건설과	화원 천내1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650,000	850,000	200,000
건설과	화원구라1리(중2-17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3,300,000	5,800,000	2,500,000

건설과	화원 유원지 주변도로 확포장	0	150,000	150,000
건설과	논공 위천리 위천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	320,000	300,000
건설과	다사 세천리 13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700,000	400,000
건설과	다사 달천리 박달예술인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000	150,000
건설과	다사 달천리(124번지)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700,000	200,000
건설과	다사 이천리 이내음지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00,000	400,000
건설과	가창 냉천2리 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000	30,000
건설과	가창 냉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1,600,000	600,000
건설과	가창 용계리 신천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60,000	60,000
건설과	가창 주리~중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	80,000	10,000
건설과	현풍 원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000	150,000
건설과	현풍 상리(현풍초교뒤)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90,000	40,000
건설과	현풍 하리(현풍로14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60,000	460,000
건설과	옥포 본리2리(대방)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1,300,000	1,200,000
건설과	옥포 강림2리(공단뒤편)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160,000	60,000
건설과	옥포 기세리(소로3-14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000	200,000
건설과	현풍 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000	200,000
건설과	현풍 부1리(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000	150,000
건설과	옥포 강림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00	700,000	100,000
건설과	옥포 교항2리 외곽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00	1,250,000	650,000
건설과	옥포 간경리(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600,000	600,000
건설과	옥포 강림리(보금자리주택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0	4,500,000	1,500,000

건설과	현풍 중3리(성창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00,000	400,000
건설과	현풍 원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0,000	40,000
건설과	성하2리(마을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00,000	400,000
건설과	유가 유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1,000,000	700,000
건설과	구지 창2리(53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50,000	1,050,000	500,000
건설과	구지 창리(면사무소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600,000	300,000
건설과	구지 목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200,000	100,000
건설과	옥포 본리1리(국도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750,000	250,000
건설과	하빈 대평1리(하빈로179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400,000	350,000
건설과	하빈 무등1리(하빈로140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400,000	350,000
건설과	화원 본리리 마비정 진입도로 선형개량	0	500,000	500,000
건설과	화원 천내리(주원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70,000	70,000
건설과	화원 천내리(화장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00	50,000
건설과	화원 천내리(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00	50,000
건설과	구지 창리 구지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00	50,000
건설과	화원 구라1리(구라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0,000	1,500,000
건설과	옥포 기세리(소로3류~옥14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00	50,000
건설과	옥포 기세리 도로 개설공사	0	100,000	100,000
건설과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500,000	700,000	200,000
건설과	도로 긴급보수비	700,000	1,200,000	500,000
건설과	가창 중주리 도로정비(교량)	0	100,000	100,000
건설과	유가 가태~본말간 도로 확포장	400,000	650,000	250,000
건설과	가창 주리 마을안길 확포장	25,000	570,000	545,000

건설과	가창 오리 인도설치	20,000	1,700,000	1,680,000
건설과	하빈 봉촌1리 양지마 도로확포장	100,000	250,000	150,000
건설과	옥포 송촌리 마을입구 도로정비	20,000	140,000	120,000
건설과	유가 양리 진입도로 확포장	20,000	400,000	380,000
건설과	유가 도의리 안길확포장	100,000	140,000	40,000
건설과	유가 한정2리 안길확포장	10,000	200,000	190,000
건설과	구지 예현리 201-1번지선 도로확포장	20,000	370,000	350,000
건설과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2015 특별교부세)	0	1,000,000	1,000,000
건설과	옥포 벚꽃길 인도설치 공사(예산 성립전 사용)(2016특교금)	0	1,000,000	1,000,000
건설과	현풍 상리 620번지 도로정비	0	100,000	100,000
건설과	화원 천내리 농협창고 옆 도로확포장	0	150,000	150,000
건설과	다사 서재리 인도설치	0	80,000	80,000
건설과	다사 부곡리 인도설치공사	0	50,000	50,000
건설과	옥포 김홍3리 1434번지선 도로정비공사	0	350,000	350,000
건설과	옥포 교항~신당간 도로확포장공사	0	150,000	150,000
건설과	하빈 동곡리 안길포장	0	200,000	200,000
건설과	하빈 동곡1리 마을회관 진입로정비	0	60,000	60,000
건설과	하빈 현내리 군도7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0	50,000	50,000
건설과	유가 한정1리 마을안길 확포장	0	400,000	400,000
건설과	다사 죽곡1지구 인도정비공사	0	100,000	100,000
건설과	옥포 기세곡천 연결도로 확장공사	0	300,000	300,000
건설과	유가 유곡리 도로확포장 공사	0	25,000	25,000
건설과	구지 화산리 12번지선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0	20,000	20,000
도시과	화원 구라리 농로확장공사	99,100	159,100	60,000

도시과	논공 상1리 농로개설공사	99,100	199,100	100,000
도시과	가창 정대2리(초곡마을) 농로개설공사	70,000	130,000	60,000
도시과	옥포 김흥리(582번지선) 농로 포장공사	158,848	228,848	70,000
도시과	유가 한정1리 농로포장공사	119,136	179,136	60,000
도시과	유가 한정2리 농로확포장공사	148,920	278,920	130,000
도시과	논공 상1리 성주골 농로개설공사	0	50,000	50,000
도시과	유가 가태1리 농로포장공사	0	130,000	130,000
도시과	옥포 교항리(416-2번지선)농로개설공사	0	250,000	250,000
도시과	유가 도의리(1091-12번지선)배수로 정비공사	0	100,000	100,000
도시과	군 청사주변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0	97,200	97,200
도시과	화원명곡 택지지구내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0	236,400	236,400
도시과	다사 죽곡1지구내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0	292,800	292,800
도시과	다사 죽곡1지구내 보행등 가공선로 지중화공사	0	40,000	40,000
도시과	관내 배수장 환경개선공사	0	70,000	70,000
도시과	다사 서재간이배수장 수중배수펌프 제조구입설치	0	65,000	65,000
도시과	옥포 본리배수장 수중배수펌프 제조구입설치	0	60,000	60,000
안전방재과	자연재난 상황 감시용 CCTV 설치	120,0000	0	△120,000
안전방재과	자연재난 홍보용 전광판 설치	0	120,000	0
안전방재과	—전광판 설치	0	120,000	120,000
안전방재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2015 재난안전특별교부세)	0	400,000	400,0000
안전방재과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10,800	0	△10,800
안전방재과	논공 남리 용호소하천 정비	200,000	0	△200,000
안전방재과	논공 남리 다람이소하천 상류 정비	297,840	397,840	100,000
안전방재과	가창 삼산리 범골소하천 정비	148,920	348,920	200,000
안전방재과	하빈 무등리 낮골소하천 지천 정비	198,560	248,560	50,000

안전방재과	옥포 본리리 옥방소하천 정비	119,136	269,136	150,000
안전방재과	현풍 부리 부리소하천 정비	297,840	897,840	600,000
안전방재과	낙동강변 둔치 유지관리 공사	0	1,295,320	1,295,320
안전방재과	구지 화산리 새담소하천 정비	0	496,400	496,400
안전방재과	가창 단산리 단산소하천 정비	0	496,400	496,400
안전방재과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	0	30,000	30,000
건축과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정비	0	88,000	0
건축과	—신규 설치 및 교체	32,000	82,000	50,000
교통과	현풍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0	469,000	469,000
교통과	지중화공사 추가분담분	0	500,000	50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200,000	300,000	100,000
교통과	스쿨존 및 이면도로 시설정비	0	100,000	100,000
교통과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90,000	190,000	100,000
교통과	화원 남평문씨세거지 주차장 조성	0	50,000	50,000
교통과	미래전략사업부지 주차장 조성	0	600,000	600,000
교통과	지하철 1호선 환승주차장 조성	0	20,000	20,000
교통과	현풍중앙로 인근 주차장 조성	0	700,000	700,000
공원녹지과	아름다운 달성만들기 사업	1,494,600	1,893,160	398,560
공원녹지과	화원동산 시설물 정비	297,840	895,500	597,660
공원녹지과	공원유원지 조경지 보완	397,120	895,500	498,380
공원녹지과	옥연지 수변복합 문화공원 조성	2,989,200	3,885,960	896,760
공원녹지과	옥연지 수변복합 문화공원 조성	0	300,000	300,000
공원녹지과	화원동산 사문진 피아노 100계 단 조성	496,400	296,400	△200,000
공원녹지과	천내근린공원 배수지 공원화 사업	0	99,280	99,280
공원녹지과	옥연지 송해공원 전기공사	0	398,000	398,000
공원녹지과	옥연지 송해공원 조경공사	0	497,500	497,500

공원녹지과	등산로 신설 및 정비	297,840	397,120	99,280
공원녹지과	둘레길 정비	794,960	993,700	198,740
공원녹지과	마비정 주변 토지(임야) 매입	0	600,000	600,000
정책사업과	화원읍사무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0	20,000	20,000
정책사업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사 업명 변경)	6,907,950	9,762,800	2,854,850
정책사업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73,850	550,000	476,150
정책사업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18,200	18,200	0
정책사업과	승객대기소 및 차고지 설치(예산 성립전 사용)	0	20,000	20,000
정책사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예산성립 전 사용)	0	20,000	20,000
정책사업과	비슬산 관광객 수송 부대시설 설치 . 보수	0	44,000	44,000
정책사업과	비슬산 수송시설 관련 간이화장 실 설치	0	70,000	70,000
정책사업과	비슬산 숲속 오토캠핑장 부대시 설 설치	0	510,000	510,000
정책사업과	경찰특공대 이전 부지 교환	0	8,000,000	8,000,000
경제과	공설시장 유지보수	40,000	50,000	10,000
문화체육과	달성 군민체육관 증개축사업 (2014 특교세)	0	414,115	414,115
문화체육과	화원명곡체육공원내 실내테니스 장 조성	0	1,000,000	1,000,000
문화체육과	다사(매곡) 테니스장 조성	0	1,230,000	1,230,000
문화체육과	화원명곡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0	80,000	80,000
관광과	마비정 벽화마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사업	0	400,000	400,000
보건과	달성군보건소 이전신축	0	1,500,000	1,500,000
농촌지도과	옥포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	408,190	571,996	163,806
농촌지도과	하빈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	187,938	373,449	185,511
농촌지도과	현풍 농기계 임대사업장 바닥 포 장공사	0	20,000	20,000

○ 주요 경상사업 및 경상경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액
기획감사실	옥외광고물 광고료	50,000	120,000	70,000
기획감사실	경관조형물 설치	0	150,000	150,000
회계과	군 홍보 게시판	0	40,700	40,700
정보통신과	전화녹음장비	0	85,000	85,000
주민지원과	보훈회관 집기비품 구입	71,000	121,000	50,000
사회복지과	수영장 탈의실 락커 및 헬스장 사물함	60,000	135,000	75,000
사회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 (테크노폴리스)	50,000	0	△50,000
청소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40,000	88,000	48,000
청소위생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18,000	84,000	66,000
청소위생과	—1톤	18,000	36,000	18,000
청소위생과	—2.5톤	0	48,000	48,000
공원녹지과	조경지 꽃묘구입	171,000	218,500	47,500
공원녹지과	화원동산 키즈카페 집기류	0	100,000	100,000
정책사업과	전기차 제작 구매(예산성립전 사용)	0	285,000	285,000
정책사업과	전기차 오리디자인 제작 설치 (예산성립전 사용)	0	30,000	30,000
문화체육과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전시작품	200,000	0	△200,000
문화체육과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및 참꽃 갤러리 전시작품 등 구입	0	200,000	200,000
문화체육과	세계명문대학조정축제	100,000	0	△100,000
문화체육과	육상 경기용품 등	96,000	0	△96,000
관광과	관광마케팅 행사 홍보	0	35,000	35,000
관광과	오토캠핑장 캐러밴 구입	0	90,000	90,000

○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옥포 벚꽃길 인도설치 공사 10억원,
화원유원지 관광전기차 운행 3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주요 국·시비보조사업 증액현황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억 5천 9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3천 8백만원
2016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6억 1천 2백만원
천내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1억원
현풍천변 간판정비사업 2억원
비슬산 관광자원화 7억원
100대 피아노콘서트 2억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4억 3백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
임업복지관 및 임산물직매장 신축 4억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 감액현황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원과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4억 3백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2억 2백만원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1억 5천 9백만원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항 10억 1천 3백만원
진천천 재해예방사업 4억 6천 9백만원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22억 4천만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7천 8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400억원 보다 17.69%인 955억원이 증가된 6,355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의 증가액 955억원 중에서
인건비에 0.03%인 2천6백 66만 9천원,
물건비에 1.16%인 11억 3백 42만원,
경상이전경비가 4.34%인 41억 4천3백 21만 5천원,

자본지출에 76.83%인 7백33억 7천6백 30만 3천원,
예비비로 10.72%인 1백2억 3천2백 61만 1천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9%인 65억 9,23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의 투자사업(74%)에 많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금번 추경에 77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시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기정 207억 5,900만 1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101억 8,261만 1천원이 증가된
 309억 4,161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2억 3,932만 3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8억 880만원으로
 총 180억 4,812만 3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여유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미래전략사업 부지매입 부분이 포함되어 많은
 재원이 계상된 점이 인정되나 공사기간의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목별, 부기별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4월 29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제7대 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에 맞게 2017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을 정함.
-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2017년도 의원 월정수당 조정(안 제3조제2항 별표2)
 - 월 1,782,550원 → 월 1,818,200원
- 나.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원여행 중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제3항)

5. 관계법령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제16조
- 다.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통보 공문(사본)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월 1,818,200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여비규정」과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4. 29.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김상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달성군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기준을 상위 법령과 통일시키고, 세부 적용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2017년도에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월 1,782,550원 → 월 1,818,200원)(안 제3조제2항)
- 나.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원여행 중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제16조
-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공문(사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구
분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 중 제1호를 준용하여 국내
여비를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용
하여 국외 여비를 지급한다.
 - 1. 항공운임, 준비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6]
 - 2. 일비, 숙박비, 식비 :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4] 중 4, 의원은 같은 규정의 [별표 4] 중 5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2016년 월정수당	월 1,782,550원
2017년 월정수당	월 1,818,200원
2018년 월정수당	전년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되, 2%를 초과할 수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비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④ (생 략)	제4조(여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구분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 중 제1호를 준용하여 국내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국외 여비를 지급한다. 1. 항공운임, 준비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6] 2. 일비, 숙박비, 식비 :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4] 중 4, 의원은 같은 규정의 [별표 4] 중 5 ④ (현행과 같음)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기 준 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
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
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
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
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
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 급 기준액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text{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text{EXP}(\text{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 20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달성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기 달성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1. 개최일자 : 2014. 10. 28(화) 15:00~

2. 심의장소 : 달성군청 8층 상황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결과

가. 2015년 의정비 지급기준 : 동결

- 합 계 액 : 34,171,200원(월 2,847,600원, 현행과 같음)

- 월 정 수 당 : 20,971,200원(월 1,747,600원, 현행과 같음)

- 의정활동비 : 13,200,000원(월 1,100,000원, 현행과 같음)

나. 2016년 ~ 2018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여부

- 매년반영. 단, 매년 2% 범위내 적용

다. 여비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 범위내. 끝.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달성군수, 달성군의회의장

위원장

↓

↓

↓

시행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2014. 10. 28)

접수

우 711-79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전화 053-668-2112

전송 053-282-7102

/ 대국민 공개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15.1.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 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14.11.19.>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26	실비(상한액: 155)	67
	나	26	실비(상한액: 123)	49
	다	26	실비(상한액: 90)	37
	라	26	실비(상한액: 7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4월 29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달성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위해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반영하여 공무국외활동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여 의회 스스로 신뢰받는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 구성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의 따르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함.

5. 관계법령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본 규칙안은

- 달성군의회 의원의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의정활동의 하나인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일부 군민과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처하고,
-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 활동의 투명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 또한 여행을 마친 의원의 여행보고서 작성 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상위 규정에 부합되게 귀국 후 제출기한이 15일 이내인 것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4. .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엄윤탁 의원

1. 제안이유

- 달성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위해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반영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 구성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함.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타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은 의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2

조제1호 내지 제3호의”를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담당이”를 “의정담당이”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달성군의회의 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의</u> -----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u>기타 달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u>	제2조(적용범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u> -----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u>의원의</u> 공무국외여행은 <u>의장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u> -----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u>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u> ③ (생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은 의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생략)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u>의사담당</u>이 된다. ③ (생략)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u>의거</u>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u>15일</u> 이내에	④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의정담당</u>이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및 여비) ----- ----- -- <u>범위에서</u> ----- ----- -----.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 ----- ----- <u>따라</u> ----- -----.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 ----- <u>30일</u> -----
--	--

별지 제2호 서식에 <u>의거</u>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_____ <u>따라</u> _____ _____ _____. ② _____-<u>에 따라</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3. 개정이유

○ 논공, 현풍, 유가 등 주택, 빌라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변동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 분리와 함께 반, 이장 정수를 늘리고, 유가, 구지의 법정리 순서를 실제 행정에서 사용하는 순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리·반 조정 : **9개리 107반 신설**(266리⇒275리, 1962반⇒2069반)

읍 면	기 준		개 정		증감		비 고
	행 정 리	반 수	행 정 리	반 수	리	반	
논 공	북 1 리	1	북 1 리	7	-	6	
현 풍	중 1 리	12	중 1 리	12	3	41	
			중 8 리	16			
			중 9 리	14			
			중 10 리	11			
	성 하 3 리	6	성 하 3 리	5	1	-	
			성 하 4 리	1			
	원 교 1 리	8	원 교 1 리	7	1	-	
			원 교 4 리	1			
	대 1 리	7	대 1 리	5	1	-	
			대 3 리	2			

읍 면	기 준		개 정		증 감		비 고
	행 정 리	반수	행 정 리	반수	리	반	
유 가	봉 1 리	3	봉 1 리	3	3	60	
			봉 7 리	21			
			봉 8 리	20			
			봉 12 리	19			

나. 이장 정수 중 9

- 1) 현풍면 : 중8리, 중9리, 중10리, 성하4리, 원교4리, 대3리
- 2) 유가면 : 봉7리, 봉8리, 봉12리

다. 법정리 순서 조정

읍 면	기 준	개 정	비 고
유 가	음리, 양리, 쌍계리, 초곡리, 용리, 봉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본말리	음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본말리	
구 지	창리, 응암리, 고봉리, 평촌리, 가천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창리, 응암리, 고봉리, 가천리, 평촌리 ,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빌라 및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9행정리 107반을 증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논공지역 6개반 신설,
현풍지역 6개리와 41개반 신설,
유가지역 3개리와 60개반 신설,
유가, 구지의 법정리 순서를 실제 행정에서 사용하는 순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리·반을 증설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읍 면 리 의 명 칭 과 관 할 구 역

읍·면의 명 칭	리의 명칭	관 할 구 역
화원읍	천내리, 구라리,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본리리	종래의 천내리, 구라리,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본리리 일원
논공읍	노이리, 금포리, 삼리리, 위천리, 상리, 하리, 남리, 북리, 본리리	종래의 노이리, 금포리, 삼리리, 위천리, 상리, 하리, 남리, 북리, 본리리 일원
다사읍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방천리, 서재리, 세천리, 죽곡리, 매곡리, 부곡리, 문양리, 문산리	종래의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방천리, 서재리(세천리로 편입된 1114, 1115, 1116, 1117번지 제외), 세천리(서재리에서 편입된 1620-1, 1620-2, 1566-4, 1633-1번지 포함), 죽곡리, 매곡리, 부곡리, 문양리, 문산리 일원
가창면	용계리, 오리, 정대리, 냉천리, 행정리, 상원리, 단산리, 대일리, 주리, 옥분리, 삼산리, 우록리	종래의 용계리, 오리, 정대리, 냉천리, 행정리, 상원리, 단산리, 대일리, 주리, 옥분리, 삼산리, 우록리 일원
하빈면	하산리, 묘리, 기곡리, 대평리, 무등리, 현내리, 감문리, 동곡리, 봉촌리	종래의 하산리, 묘리, 기곡리, 대평리, 무등리, 현내리, 감문리, 동곡리, 봉촌리 일원
옥포면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홍리	종래의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홍리 일원
현풍면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종래의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일원
유가면	읍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본말리	종래의 읍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본말리 일원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가천리, 평촌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종래의 창리, 응암리, 고봉리, 가천리, 평촌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일원

【별표2】

이 장 정 수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계	95	275	275
화원읍	천내리	16	천내1리 천내2리 천내3리 천내4리 천내5리 천내6리 천내7리 천내8리 천내9리 천내10리 천내11리 천내12리 천내13리 천내14리 천내15리 천내16리
	구라리	9	구라1리 구라2리 구라3리 구라4리 구라5리 구라6리 구라7리 구라8리 구라9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화원읍	성산리	6	성산1리 성산2리 성산3리 성산4리 성산5리 성산6리
	설화리	2	설화1리 설화2리
	명곡리	7	명곡1리 명곡2리 명곡3리 명곡4리 명곡5리 명곡6리 명곡7리
	본리리	6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본리6리
화원읍 소계	6	46	46
논공읍	노이리	2	노이1리 노이2리
	금포리	3	금포1리 금포2리 금포3리
	삼리리	2	삼리1리 삼리2리
	위천리	1	위천리
	상리	1	상리
	하리	1	하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남 리	9	남1리 남2리 남3리 남4리 남5리 남6리 남7리 남8리 남9리
	북 리	7	북1리 북2리 북3리 북4리 북5리 북6리 북7리
	본리리	-	
논공읍 소계	9	26	26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0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세천리	1	세천리
	죽곡리	10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매곡리	18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11	47	47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가창면	용계리	7	용계1리 용계2리 용계3리 용계4리 용계5리 용계6리 용계7리
	오 리	2	오1리 오2리
	정대리	2	정대1리 정대2리
	냉천리	2	냉천1리 냉천2리
	행정리	2	행정1리 행정2리
	상원리	2	상원1리 상원2리
	단산리	1	단산리
	대일리	2	대일1리 대일2리
	주 리	2	주1리 주2리
	옥분리	1	옥분리
	삼산리	1	삼산리
	우록리	2	우록1리 우록2리
가창면 소계	12	26	26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하빈면	하산리	2	하산1리 하산2리
	묘리	2	묘1리 묘2리
	기곡리	2	기곡1리 기곡2리
	대평리	2	대평1리 대평2리
	무등리	2	무등1리 무등2리
	현내리	3	현내1리 현내2리 현내3리
	감문리	2	감문1리 감문2리
	동곡리	2	동곡1리 동곡2리
	봉촌리	2	봉촌1리 봉촌2리
하빈면 소계	9	19	19
옥포면	본리리	4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3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강림리	4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면	반송리	2	반송1리
	김흥리	3	반송2리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면 소계	9	20	20
현풍면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10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현 풍면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신기리	1	신기리
현 풍면 소계	11	34	34
유가면	음 리	1	음 리
	양 리	2	양1리 양2리
	용 리	2	용2리 용3리
	봉 리	5	봉1리 봉3리 봉7리 봉8리 봉12리
	쌍계리	3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초곡리	1	초곡리
	상 리	1	상 리
	금 리	1	금 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유가면 소계	13	28	28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구지면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응암리	4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2	내1리 내2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29	29

【별표3】

리 반 의 명 칭 및 관 할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논 공 읍	북 1 리	제 1 반	413 ~ 440
		2	450 ~ 500
		3	501 ~ 550
		4	570 ~ 600
		5	650 ~ 700
		6	701 ~ 750
		7	751 ~ 835
현 풍 면	중 8 리	제 1 반	487(천년나무 1차) 101동 101~2201, 102~2202, 103~2203, 104~2204
		2	487(천년나무 1차) 101동 105~2205, 106~2206, 107~2207, 108~2208
		3	487(천년나무 1차) 102동 301~2401, 302~2402, 303~2403, 304~2404
		4	487(천년나무 1차) 102동 305~2405, 306~2406, 307~2407, 308~2408
		5	487(천년나무 1차) 103동 101~2501, 102~2402, 103~2403, 104~2404
		6	487(천년나무 1차) 103동 105~2405, 106~2406, 107~2407, 108~2408
		7	487(천년나무 1차) 104동 101~2401, 102~2402, 103~2403, 104~2404
		8	487(천년나무 1차) 104동 105~2405, 106~2406, 107~2407, 108~2408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면	중 8 리	제 9 반	487(천년나무 1차) 105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호
		10	487(천년나무 1차) 105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1	487(천년나무 1차) 106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2	487(천년나무 1차) 106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3	487(천년나무 1차) 107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4	487(천년나무 1차) 107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15	487(천년나무 1차) 108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6	487(천년나무 1차) 108동 105~2105, 106~2106, 107~1907, 108~1908
	중 9 리	제 1 반	488(천년나무 2차) 201동 101~1801, 102~1802, 103~2003, 104~2004
		2	488(천년나무 2차) 201동 105~2005, 106~2006, 307~2007, 308~2008
		3	488(천년나무 2차) 202동 101~1801, 102~1802, 103~2003, 104~2004
		4	488(천년나무 2차) 202동 105~2005, 106~2006, 107~2007, 108~2008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면	중 9 리	제 5 반	488(천년나무 2차) 203동 101~1901, 102~1902, 103~2103, 104~2104
			6 488(천년나무 2차) 203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7 488(천년나무 2차) 204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8 488(천년나무 2차) 204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9 488(천년나무 2차) 205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10 488(천년나무 2차) 205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11 488(천년나무 2차) 206동 301~2101, 302~2102, 303~2103, 304~2104
			12 488(천년나무 2차) 206동 305~2105, 306~2106, 307~2107, 308~2108
			13 488(천년나무 2차) 207동) 101~2101, 102~2102, 103~2103, 304~2104
			14 488(천년나무 2차) 207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중 10 리	제 1 반	484(풍경채 1차) 101동 101~1201, 102~1202, 103~1203, 105~1205
			2 484(풍경채 1차) 102동 101~1301, 102~1602, 103~1603, 105~1605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면	중 10 리	제 3 반	484(풍경채 1차) 103동 101~1501, 102~1502, 103~1803, 105~1805, 106~1806
		4	484(풍경채 1차) 104동 101~1701, 102~1702호
		5	484(풍경채 1차) 105동 101~1401, 102~1402
		6	484(풍경채 1차) 106동 101~1301, 102~1302호
		7	484(풍경채 1차) 107동 101~1601, 102~1602, 103~1603, 105~1605
		8	484(풍경채 1차) 108동 101~1701, 102~1702, 103~1803, 105~1805, 106~1806
		9	484(풍경채 1차) 109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5~1705
		10	484(풍경채 1차) 110동 101~1401, 102~1402, 103~1403, 105~1405
		11	484(풍경채 1차) 111동 101~1101, 102~1102, 103~1103, 105~1105
	성 하3리	제 1 반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생략(현행과 같음)
		4	생략(현행과 같음)
		5	생략(현행과 같음)
		6	<폐지>
	성 하4리 원교1리	제 1 반	145 ~ 192
		제 1 반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생략(현행과 같음)
		4	생략(현행과 같음)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면	원교1리	제 5 반	생략(현행과 같음)
		6	생략(현행과 같음)
		7	생략(현행과 같음)
		8	<폐지>
	원교4리 대 1 리	제 1 반	1585 ~ 1731
		제 1 반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생략(현행과 같음)
		4	생략(현행과 같음)
		5	생략(현행과 같음)
		6	<폐지>
		7	<폐지>
	대 3 리	제 1 반	401 ~ 414
		2	2 ~ 310
유 가 면	봉 1 리	제 1 반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생략(현행과 같음)
	봉 7 리	제 1 반	604(남해오네뜨 2차) 201동 201~2001, 202~2002
		2	604(남해오네뜨 2차) 201동 203~2003, 204~2004
		3	604(남해오네뜨 2차) 202동 201~2001, 202~2002
		4	604(남해오네뜨 2차) 202동 203~2003, 203~2004
		5	604(남해오네뜨 2차) 203동 201~1901, 202~1902)
		6	604(남해오네뜨 2차) 203동 203~1903, 204~1904
		7	604(남해오네뜨 2차) 204동 201~1701, 202~1702
		8	604(남해오네뜨 2차) 204동 203~2103, 204~2104
		9	604(남해오네뜨 2차) 205동 201~1701, 302~1702
		10	604(남해오네뜨 2차) 205동 203~2103, 204~2104

읍 면	리	반	구 역
유 가 면	봉 7 리	제 11 반	604(남해오네뜨 2차) 206동 201~2001, 202~2002
		12	604(남해오네뜨 2차) 206동 203~1703, 204~1704
		13	604(남해오네뜨 2차) 207동 201~1701, 202~1702
		14	604(남해오네뜨 2차) 207동 203~1703, 204~1704
		15	604(남해오네뜨 2차) 208동 201~1701, 202~1702
		16	604(남해오네뜨 2차) 208동 203~2003, 204~2004
		17	604(남해오네뜨 2차) 209동 201~2001, 202~2002
		18	604(남해오네뜨 2차) 209동 203~1703, 204~1704
		19	604(남해오네뜨 2차) 210동 201~1701, 202~1702
		20	604(남해오네뜨 2차) 210동 203~1703, 204~1704
		21	604(남해오네뜨 2차) 211동 201~1801, 202~1802, 203~2103
	봉 8 리	제 1 반	621(우미린) 101동 301~2201, 302~2202
		2	621(우미린) 101동 303~2203, 304~2204
		3	621(우미린) 102동 101~2101, 102~2102
		4	621(우미린) 102동 103~2003, 104~2004
		5	621(우미린) 103동 201~2201, 102~2202
		6	621(우미린) 103동 103~2003, 104~2004

읍 면	리	반	구 역
유 가 면	봉 8 리	제 7 반	621(우미린) 104동 101~2201, 102~2202
		8	621(우미린) 104동 103~1803, 104~1804
		9	621(우미린) 105동 101~2201, 202~2202
		10	621(우미린) 105동 203~2203, 204~2204
		11	621(우미린) 106동 101~2201, 102~2202
		12	621(우미린) 106동 103~2203, 104~2204
		13	621(우미린) 107동 101~1801, 102~1802
		14	621(우미린) 107동 103~2203, 104~2204
		15	621(우미린) 108동 101~2001, 102~2002
		16	621(우미린) 108동 103~2203, 204~2204
		17	621(우미린) 109동 201~1701, 102~1702
		18	621(우미린) 109동 103~2103, 104~2104
		19	621(우미린) 110동 101~2201, 102~2202
		20	621(우미린) 110동 103~2203, 104~2204
	봉 12 리	제 1 반	622(힐데스하임) 101동 101~1601, 102~1602
		2	622(힐데스하임) 101동 303~1603, 104~1604
		3	622(힐데스하임) 102동 101~1601, 102~1602
		4	622(힐데스하임) 102동 303~1603, 104~1604

읍 면	리	반	구 역
유 가 면	봉 12 리	제 5 반	622(힐데스하임) 103동 301~1901, 102~1902
		6	622(힐데스하임) 104동 101~2201, 102~2202)
		7	622(힐데스하임) 104동 103~2203, 304~2204
		8	622(힐데스하임) 105동 101~1301, 102~1302
		9	622(힐데스하임) 105동 103~1303, 104~1304
		10	622(힐데스하임) 106동 101~1301, 102~1302
		11	622(힐데스하임) 106동 303~1303, 104~1304
		12	622(힐데스하임) 107동 201~1901, 202~1902
		13	622(힐데스하임) 108동 101~2201, 102~2202
		14	622(힐데스하임) 108동 103~2203, 104~2204
		15	622(힐데스하임) 108동 305~1905, 106~1906
		16	622(힐데스하임) 109동 101~1901, 102~1902
		17	622(힐데스하임) 110동 101~2201, 102~2202
		18	622(힐데스하임) 110동 103~2003, 104~2004
		19	622(힐데스하임) 110동 305~2005, 106~2006
구 지 면	가 천 리	제 1 반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생략(현행과 같음)
		4	생략(현행과 같음)
	평촌1리	제 1 반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생략(현행과 같음)
		4	생략(현행과 같음)
	평촌2리	제 1 반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생략(현행과 같음)
		3	생략(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1】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의 명칭	현행	개정안
	리의 명칭	리의 명칭
화원읍	천내리, 구라리,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본리리	천내리, 구라리,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본리리
논공읍	노이리, 금포리, 삼리리, 위천리, 상리, 하리, 남리, 북리, 본리리	노이리, 금포리, 삼리리, 위천리, 상리, 하리, 남리, 북리, 본리리
다사읍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방천리, 서재리, 세천리, 죽곡리, 매곡리, 부곡리, 문양리, 문산리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방천리, 서재리, 세천리, 죽곡리, 매곡리, 부곡리, 문양리, 문산리
가창면	용계리, 오리, 정대리, 냉천리, 행정리, 상원리, 단산리, 대일리, 주리, 옥분리, 삼산리, 우록리	용계리, 오리, 정대리, 냉천리, 행정리, 상원리, 단산리, 대일리, 주리, 옥분리, 삼산리, 우록리
하빈면	하산리, 묘리, 기곡리, 대평리, 무등리, 현내리, 감문리, 동곡리, 봉촌리	하산리, 묘리, 기곡리, 대평리, 무등리, 현내리, 감문리, 동곡리, 봉촌리
옥포면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본리리, 신당리, 교항리, 강림리, 송촌리, 간경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현풍면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상리, 중리, 하리, 부리, 성하리, 원교리, 자모리, 오산리, 지리, 대리, 신기리
유가면	음리, 양리, 쌍계리, 초곡리, 용리, 봉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본말리	음리, 양리, <u>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u> ,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본말리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u>평촌리</u> , <u>가천리</u> ,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정리, 오설리, 도동리	창리, 응암리, 고봉리, <u>가천리</u> , <u>평촌리</u> ,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정리, 오설리, 도동리

【별표2】

이 장 정 수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현풍면	상 리	2	상1리 상2리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7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 리	10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하 리	1	하 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3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3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자모리	1	자모리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대 리	2	대1리 대2리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신기리	1	신기리	신기리	1	신기리
현풍면 소계	11	28	28	11	34	34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유가면	음 리	1	음 리	음 리	1	음 리
	양 리	2	양1리 양2리	양 리	2	양1리 양2리
	쌍계리	3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u>용 리</u>	2	용2리 용3리
	초곡리	1	초곡리	<u>봉 리</u>	<u>5</u>	봉1리 봉3리
	용 리	2	용2리 용3리			<u>봉7리</u> <u>봉8리</u> <u>봉12리</u>
	봉 리	2	봉1리 봉3리	<u>쌍계리</u>	3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u>초곡리</u>	1	초곡리
	상 리	1	상 리	상 리	1	상 리
	금 리	1	금 리	금 리	1	금 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유가면 소계	13	25	25	13	<u>28</u>	<u>28</u>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구지면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응암리	4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리	4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고봉리	1	고봉리	고봉리	1	고봉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가천리	1	가천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2	내1리 내2리	내 리	2	내1리 내2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29	29	15	29	29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논공읍	북1리	제1반	413 ~ 440	논공읍	북1리	제1반	413 ~ 440
			450 ~ 500			2	450 ~ 500
			501 ~ 550			3	501 ~ 550
			570 ~ 600			4	570 ~ 600
			650 ~ 700			5	650 ~ 700
			701 ~ 750			6	701 ~ 750
			751 ~ 835			7	751 ~ 835
현풍면	<신설>			현풍면	중8리	제1반	487(천년나무1차)101동 101~2201,102~2202, 103~2203,104~2204
						2	487(천년나무1차)101동 105~2205,106~2206, 107~2207,108~2208
						3	487(천년나무1차)102동 301~2401,302~2402, 303~2403,304~2404
						4	487(천년나무1차)102동 305~2405,306~2406, 307~2407,308~2408
						5	487(천년나무1차)103동 101~2501,102~2402, 103~2403,104~2404
						6	487(천년나무1차)103동 105~2405,106~2406, 107~2407,108~2408
						7	487(천년나무1차)104동 101~2401,102~2402, 103~2403,104~2404
						8	487(천년나무1차)104동 105~2405,106~2406, 107~2407,108~2408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풍면	〈신설〉			현풍면	중8리	제9반	487(천년나무1차)105동 101~2101,102~2102, 103~2103,104~2104
						10	487(천년나무1차)105동 105~2105,106~2106, 107~1907,108~1908
						11	487(천년나무1차)106동 101~2101,102~2102, 103~2103,104~2104
						12	487(천년나무1차)106동 105~2105,106~2106, 107~1907,108~1908
						13	487(천년나무1차)107동 101~2101,102~2102, 103~2103,104~2104
						14	487(천년나무1차)107동 105~2105,106~2106, 107~1907,108~1908
						15	487(천년나무1차)108동 101~2101,102~2102, 103~2103,104~2104
						16	487(천년나무1차)108동 105~2105,106~2106, 107~1907,108~1908
	〈신설〉				중9리	제1반	488(천년나무2차)201동 101~1801,102~1802, 103~2003,104~2004
						2	488(천년나무2차)201동 105~2005,106~2006, 307~2007,308~2008
						3	488(천년나무2차)202동 101~1801,102~1802, 103~2003,104~2004
						4	488(천년나무2차)202동 105~2005,106~2006, 107~2007,108~2008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풍면	<신설>			현풍면	중9리	제5반	488(천년나무2차)203동 101~1901,102~1902, 103~2103,104~2104
						6	488(천년나무2차)203동 105~2105,106~2106, 107~2107,108~2108
						7	488(천년나무2차)204동 101~2101,102~2102, 103~2103,104~2104
						8	488(천년나무2차)204동 105~2105,106~2106, 107~2107,108~2108
						9	488(천년나무2차)205동 101~2101,102~2102, 103~2103,104~2104
						10	488(천년나무2차)205동 105~2105,106~2106, 107~2107,108~2108
						11	488(천년나무2차)206동 301~2101,302~2102, 303~2103,304~2104
						12	488(천년나무2차)206동 305~2105,306~2106, 307~2107,308~2108
						13	488(천년나무2차)207동 101~2101,102~2102, 103~2103,304~2104
						14	488(천년나무2차)207동 105~2105,106~2106, 107~2107,108~2108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풍면	<신설>			현풍면	중10리	제1반	484(풍경채1차) 101동 101~1201,102~1202, 103~1203,105~1205
						2	484(풍경채1차) 102동 101~1301,102~1602, 103~1603,105~1605
						3	484(풍경채 1차) 103동 101~1501, 102~1502, 103~1803, 105~1805, 106~1806
						4	484(풍경채 1차) 104동 101~1701,102~1702
						5	484(풍경채 1차) 105동 101~1401, 102~1402
						6	484(풍경채 1차) 106동 101~1301, 102~1302
						7	484(풍경채 1차) 107동 101~1601, 102~1602, 103~1603, 105~1605
						8	484(풍경채 1차) 108동 101~1701, 102~1702, 103~1803, 105~1805, 106~1806
						9	484(풍경채 1차) 109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5~1705
						10	484(풍경채 1차) 110동 101~1401, 102~1402, 103~1403, 105~1405
						11	484(풍경채 1차) 111동 101~1101, 102~1102, 103~1103, 105~1105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풍면	성하 3리	제1반 2 3 4 5 6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풍면	성하 3리	제1반 2 3 4 5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폐지
	〈신설〉				성하 4리	제1반	145~192
	원교 1리	제1반 2 3 4 5 6 7 8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원교 1리	제1반 2 3 4 5 6 7 〈폐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원교 4리	제1반	1585~1731
	대1리	제1반 2 3 4 5 6 7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대1리	제1반 2 3 4 5 〈폐지〉 〈폐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대3리	제1반 2	401~414 2~310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유가면	〈신설〉			유가면	봉7리	제1반	604(남해오네뜨2차)201동 201~2001, 202~2002
						2	604(남해오네뜨2차)201동 203~2003, 204~2004
						3	604(남해오네뜨2차)202동 201~2001, 202~2002
						4	604(남해오네뜨2차)202동 203~2003, 203~2004
						5	604(남해오네뜨2차)203동 201~1901, 202~1902
						6	604(남해오네뜨2차)203동 203~1903, 204~1904
						7	604(남해오네뜨2차)204동 201~1701, 202~1702
						8	604(남해오네뜨2차)204동 203~2103, 204~2104
						9	604(남해오네뜨2차)205동 201~1701, 302~1702
						10	604(남해오네뜨2차)205동 203~2103, 204~2104
						11	604(남해오네뜨2차)206동 201~2001, 202~2002
						12	604(남해오네뜨2차)206동 203~1703, 204~1704
						13	604(남해오네뜨2차)207동 201~1701, 202~1702
						14	604(남해오네뜨2차)207동 203~1703, 204~1704
						15	604(남해오네뜨2차)208동 201~1701, 202~1702
						16	604(남해오네뜨2차)208동 203~2003, 204~2004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유가면	〈신설〉			유가면	봉7리	제17반	604(남해오네뜨2차)209동 201~2001, 202~2002
						18	604(남해오네뜨2차)209동 203~1703, 204~1704
						19	604(남해오네뜨2차)210동 201~1701, 202~1702
						20	604(남해오네뜨2차)210동 203~1703, 204~1704
						21	604(남해오네뜨2차)211동 201~1801, 202~1802 203~2103
	〈신설〉				봉8리	제1반	621(우미린) 101동 301~2201, 302~2202
						2	621(우미린) 101동 303~2203, 304~2204
						3	621(우미린) 102동 101~2101, 102~2102
						4	621(우미린) 102동 103~2003, 104~2004
						5	621(우미린) 103동 201~2201, 102~2202
						6	621(우미린) 103동 103~2003, 104~2004
						7	621(우미린) 104동 101~2201, 102~2202
						8	621(우미린) 104동 103~1803, 104~1804
						9	621(우미린) 105동 101~2201, 202~2202
						10	621(우미린) 105동 203~2203, 204~2204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유가면	〈신설〉			유가면	봉8리	제11반	621(우미린) 106동 101~2201, 102~2202
						12	621(우미린) 106동 103~2203, 104~2204
						13	621(우미린) 107동 101~1801, 102~1802
						14	621(우미린) 107동 103~2203, 104~2204
						15	621(우미린) 108동 101~2001, 102~2002
						16	621(우미린) 108동 103~2203, 204~2204
						17	621(우미린) 109동 201~1701, 102~1702
						18	621(우미린) 109동 103~2103, 104~2104
						19	621(우미린) 110동 101~2201, 102~2202
						20	621(우미린) 110동 103~2203, 104~2204
	〈신설〉				봉12리	제1반	622(힐데스하임)101동 101~1601, 102~1602
						2	622(힐데스하임)101동 303~1603, 104~1604
						3	622(힐데스하임)102동 101~1601, 102~1602
						4	622(힐데스하임)102동 303~1603, 104~1604
						5	622(힐데스하임)103동 301~1901, 102~1902
						6	622(힐데스하임)104동 101~2201, 102~2202)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유가면	<신설>			유가면	봉12리	제7반	622(힐데스하임)104동 103~2203, 304~2204
						8	622(힐데스하임)105동 101~1301, 102~1302
						9	622(힐데스하임)105동 103~1303, 104~1304
						10	622(힐데스하임)106동 101~1301, 102~1302
						11	622(힐데스하임)106동 303~1303, 104~1304
						12	622(힐데스하임)107동 201~1901, 202~1902
						13	622(힐데스하임)108동 101~2201, 102~2202
						14	622(힐데스하임)108동 103~2203, 104~2204
						15	622(힐데스하임)108동 305~1905, 106~1906
						16	622(힐데스하임)109동 101~1901, 102~1902
						17	622(힐데스하임)110동 101~2201, 102~2202
						18	622(힐데스하임)110동 103~2003, 104~2004
						19	622(힐데스하임)110동 305~2005, 106~2006
구지면	평촌 1리	제1반 2 3 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구지면	가천리	제1반 2 3 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평촌 2리	제1반 2 3	(생략) (생략) (생략)		평촌 1리	제1반 2 3 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가천리	제1반 2 3 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평촌 2리	제1반 2 3	(생략) (생략) (생략)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회계과)

3.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신설(안 제23조 제1항, 안 제25조의2)
- 나.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32조 제5항)
-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대상 정비(안 제40조)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주민단체에 수의 매각 가능
- 라. 감정평가 의로 가능한 범위 확대(안 제66조)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제29조,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와 대부료·사용료 30%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공유재산 분필을 위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함으로써 참여 가능한 감정평가사의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군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평가 등”을 “평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7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6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66조 후단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u>평가</u>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에서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23조(준용규정) ① ----- ----- <u>평가</u> ,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④ (생략) <신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가능하며,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단,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이어진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 ~ 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5. (생략)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7. (생략) <신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u>감정평가법인</u>에 의뢰한다.	5. (현행과 같음)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8. <u>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u>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 ----- ----- ----- ----- <u>감정평가업자</u> ----- -.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제29조, 제94조의2**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015.9.15.)

제15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인접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

3.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집인 포산어린이집, 현풍천년나무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설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추가(안 별표)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포산어린이집, 현풍천년나무 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매곡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14길 11, 203동 1층(주공아파트)
죽곡휴먼시아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1길 6, 106동 1층(죽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서재휴먼시아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4길 2, 108동 1층(서재휴먼시아아파트)
하빈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04
옥포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4길 25
구지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중앙3길 12
강림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 51(천년나무2단지)
포산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북로2길 10(테크노폴리스천년나무1단지)
현풍천년나무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북로2길 30(테크노폴리스천년나무2단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5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안전방재과)

3.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2014.12.30)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군민의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 확대 : 시설물의 지붕(안 제4조)

다.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시기 추가(안 제5조)

라.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작업중지 시기 추가(안 제6조, 제7조)

마. 제설·제빙작업 도구의 비치 및 관리(안 제9조)

5.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현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가 해당 시설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에 까지 확대 되었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는 한편,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제8조에서는 제설·제빙 완료시점과 방법을 명시하였고,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 내에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한편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별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들의 자율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부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축물 구조에서 힘이 걸리는 정도에 관하여 미리 구조계산을 하여 산정한 규격 및 양에 따라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

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通行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그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및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		제설 · 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 · 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 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69호)**

「건축구조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중 (1)의 “<표 0304.2.1>에 의한다. 이때 <표 0304.2.1>”를 “<그림 0304.2.2>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 때 <그림 0304.2.2>”로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를 “<그림 0304.2.2>상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2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2>상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로 한다.

제3장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중 “<표 0304.2.2>에 의한다.”를 “<그림 0304.2.2>에 따른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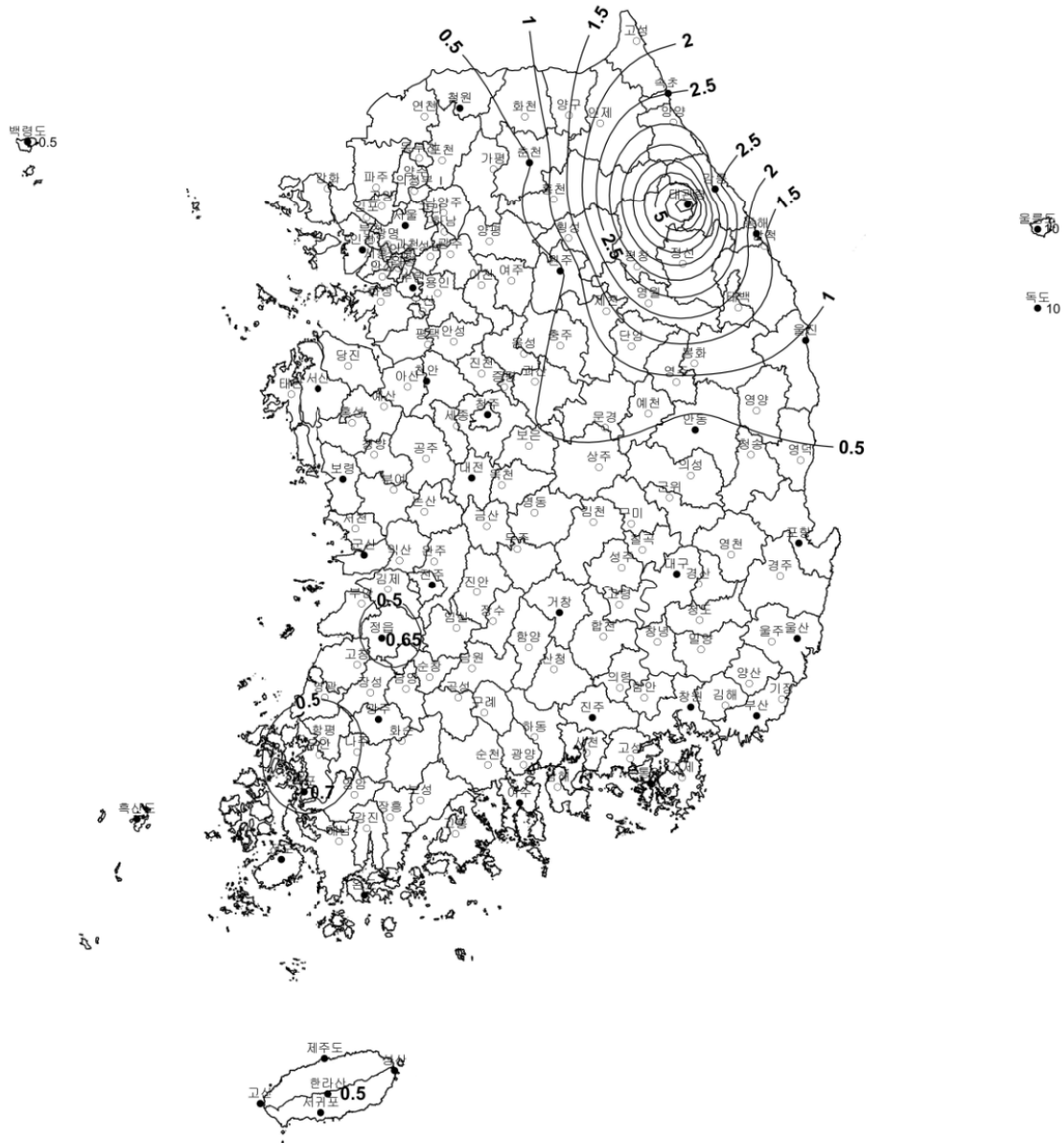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s_g 를 삭제하고 <그림 0304.2.2>기본지상적설하중 s_g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S_g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